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2008. 7.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08.5.1)에 따라 우리시 기본 목표치인 현정원의 8.1%인 4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08. 7. 3)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표준 정원조례를 제시함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시의회의 직급별 정원 (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 590명 ⇒ 542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579명 ⇒ 531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본 청 : 376명 ⇒ 348명(감 28명)

가) 직급별 : 감(6급 3명, 7급 2명, 8급 10명, 9급 8명, 별정 1명, 기능 4명)

2) 의회사무과 : 11명(변동없음)

3) 직속기관 : 41명 ⇒ 37명 (감 4명)

가) 직급별 : 감(8급 3명, 기능 1명)

4) 사 업 소 : 86명 ⇒ 78명 (증 1명, 감 9명)

가) 직급별 : 증(6급 1명), 감(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 5명)

5) 동 : 76명 ⇒ 68명 (감 8명)

가) 직급별 : 감(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1) 종류별 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1%이내	1%이내

2) 직급별 책정기준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5%이내	26.5%이내	36%이내	26%이내	3%이상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5%이내	18.5%이내	34.5%이내	34.5%이상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2006.12.22 조례 제2038호 부칙 ②(한시정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1%이내	1%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5%이내	26.5%이내	36%이내	26%이내	3%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5%이내	18.5%이내	34.5%이내	34.5%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42	542				
정 무 직 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419	419				
2급						
3급						
4급	4	3		1		
5급	31	15	2	1	5	8
6급 이하 계	384	384				
별정직 계	2	2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	2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6	6				
지도관						
지도사	6	6				
기능직 계	111	11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900호]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